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 14 조(수업일수 및 방법)</p> <p>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</p> <p>②총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p> <p>③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블록수업,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 14 조(수업일수 및 방법)</p> <p>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</p> <p>②총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p> <p>③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블록수업,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④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과정 중 전체 수업일수의 20% 범위내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 또한, 질병의 확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전체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제 27 조 (이수학점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5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 27 조 (이수학점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3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</p>
<p>제 34 조 (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)</p> <p>①석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 및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제 34 조 (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)</p> <p>①석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단, 국제기구학과의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.</p> <p>②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 및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
	<p>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p>